

# 붙임1.

##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로 변경되었으니 청약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합니다.(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후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청약 미접수 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홈페이지(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9층 2개동 총 16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구분	주택형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예비)	입주 예정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74A	54	74.7362	26.4173	101.1535	60.9882	162.1417	6(30)	'27년 10월 예정
	74B	54	74.7743	26.6347	101.4090	61.0193	162.4283	6(30)	
	84A	27	84.8465	28.4273	113.2738	69.2387	182.5125	2(10)	
	84B	27	84.6396	28.6658	113.3054	69.0699	182.3753	2(10)	
	계	162	-	-	-	-	-	12(80)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배정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수치는 예비입주자 배정세대로 500% 적용하였습니다.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구분	74A	74B	84A	84B	계
국가유공자 등	1(5)	1(5)	1(5)	1(5)	4(20)
장기복무제대군인	1(5)	2(10)	-	-	3(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1(5)	-	-	2(10)
중소기업근로자	2(10)	1(5)	-	-	3(15)
장애인(경기도)	1(5)	1(5)	1(5)	1(5)	4(20)
<b>계</b>	<b>6(30)</b>	<b>6(30)</b>	<b>2(10)</b>	<b>2(10)</b>	<b>16(80)</b>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4.05.16.(목)	일간신문 및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홈페이지 (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4.05.27.(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
당첨자발표(동호수발표)	2024.06.04.(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계약체결	2024.06.17.(월) ~ 2024.06.19.(수)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견본주택

-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신한인증서 등) 및 자격검증서류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특별공급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만 가능)
- ※ **상기 공급개요 및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 및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라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군복지단이 추천(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우선공급대상자(당해 지역 청약)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유형별 청약통장 조건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청약예금 :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 시 청약 통장 최소 예치 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4.05.16.(금)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의거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서류접수를 통해 자격검증 시 건본주택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첨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예비자 포함)을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해당기관장의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청약 기본자격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에 결격 사유가 있을 시 향후 부적격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니 당첨자 선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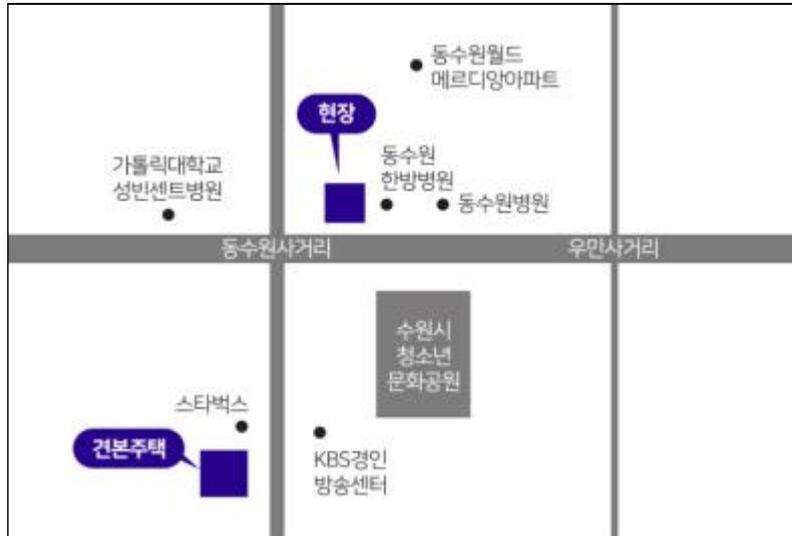
#### ■ 기타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05.16.(목)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팸플릿 및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홈페이지(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com)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031-234-9010

### IV

#### 건분주택 위치 및 상품 안내

#### ■ 건분주택 위치



**건분주택**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건분주택

☎ 031-234-9010

**사 업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

※ 단지 인근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인·허가나 정부 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청 및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수탁자** : (주)무궁화신탁 / **시행위탁자** : 대선건설(주) / **시공사** : 진흥기업(주)